복지 분과

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
(위기청소년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)



여성가족부

사업개요

본 사업의 제안취지

✓ 오랜 기간 위기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면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낌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이 각각의 시스템으로 운용됨으로서 인해 적기에 개입을 못하거나, 이미 지원되던 청소년을 놓쳐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됨

✓ 기관별로 청소년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을 탈피하여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제안함

본 사업의 제안내용

위기청소년이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·통합·고도화하는 위기청소년 원스톱 시스템 구축

사업 내용

현재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 정보망을 연계·통합·고도화하는 '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'을 구축

【 현 재 】

‣지원 기관별 자체 정보망 운영

·상담복지센터(여가부): CYS-Net 정보망(17만명)

·청소년쉼터(여가부): 쉼터행정지원시스템(3만명)

·드림스타트(복지부): 행복e음(14만명)

·학업중단청소년(교육부) → 학교밖센터(여가부) : 꿈드림 정보망(5만명)

·기타(1388·경찰 등): 개별 정보 보유

통합 ⇨

위기청소년 ⇨ 추출

【 향 후 】

‣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약 30만명)

·문제 상황 파악 可

·지원사항 이력 관리 可

·고위기 사례 추출 및 선제적 지원 可

·학업중단 청소년 학교-학교밖센터 즉시 연계 可

※ 위기청소년 : 약 78만명 추산('16)

필요성

사업 필요성

① 현재 위기청소년 관리시스템은 기관별로 운영 중으로 위기청소년이 한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도 지원시스템이 각각 운영되어 다른 유관 지원기관에서는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

- 위기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단기적 서비스로 종료되거나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함
- 현재의 청소년안전망은 상담전화, 온라인 상담으로 본인이 신청하거나, 학교·지자체·경찰 의뢰로 연계된 경우가 대다수

② 위기청소년을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·통합·고도화 하여 위기청소년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이 필요

- 복지부(e-행복이음), 관련기관(상담센터, 학교밖센터, 쉼터 등), 1388상담채널 등의 관련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 구축
- 위기청소년 정보 연동에 따른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가 행정망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안 강화

예산

사업 예산

[총 예산]

총 3,800백만원

[20년도 예산 요구액 : 총 3,953백만원]

- **BPR 및 ISP 컨설팅 : 300백만원**
- **위기청소년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 : 3,500백만원**
  - 시스템 통합 및 연동
    * 여성가족부 각 사업별·기관별 시스템 통합
      YS-Net, 학교밖청소년, 청소년쉼터,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
    * 타 부처 시스템 연동(450백만원) :
      교육부(NEIS), 경찰청, 보건복지부(행복e음) 등
  - 사용자인증 강화모듈(OTP 인증 시스템 구현)
  -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
  - 정보보호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

사업 검토시 고려사항

① 지원근거

- **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**

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외국 및 민간의 사례

[영국]
- 모든 학생에게 고유번호(식별번호)를 부여하여 16세 이상까지 교육 이력을 추적하여 학적 및 학교탈락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
- 사회적 정보(위탁가정 거주 여부 등 보호 이력, 결식지원 대상 여부, 인종과 모국어 등)를 관리
-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추적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하게 예방하는 수단이며 학교, (지방·중앙)정부가 데이터를 공유하고, '교육'목적으로만 활용
- PRU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으로, 의무교육 대상자가 퇴학, 질병 등 각종 사유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모든 교육을 제공

[스코틀랜드]
-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데이터망(스코트랜드 직업능력개발원 운영)으로 학생이 15.5세가 되면 학교 시스템(SEEMIS) 내의 진로계획 등 정보가 16+ 데이터 허브로 이관·등록됨
- 16세 이상 청소년의 대학진학 여부, 인턴쉽 등 국가훈련프로그램 참여 정보, 세금납입정보 등 데이터가 집적되어 NEET 청소년 발굴과 교육·훈련프로그램의 선제적 맞춤지원을 목적으로 가동됨

사업 검토시 고려사항

③ 사업추진절차

연도	2019년		2020년		2021년 ~
내용	'20년도 예산 확보	⇨	① BPR 및 ISP 수립 (~3월) *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② 시스템 구축(~12월)	⇨	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